

## 박사 후 전문연구원규정

개정일: 2001.07.05

제정일: 1995.01.19

### 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본 대학교 박사후전문연구원(Post Doc.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 조 (정의)

박사후전문연구원이라 함은 박사학위 취득 후의 전문분야 연구를 목적으로 본교의 각 연구원(소) 또는 두뇌한국 21 각 사업단(팀)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.

### 제 3 조 (자격)

박사후전문연구원은 국내·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,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. 다만, 외국인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.

### 제 4 조 (임용)

박사후전문연구원은 각 대학원장 또는 각 연구원(소)장의 추천에 따라 총장이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임용한다.

1. 소 속 : 박사후전문연구원의 소속은 교내 각 연구원(소) 또는 두뇌한국 21 각 사업단(팀)으로 한다.
2. 임용기간 : 1 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, 1 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두뇌한국 21 사업에 관련된 자의 임용기간은 한 학기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 임용기간은 각 사업단(팀)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.
3. 대 우 : 가. 보수 및 모든 경비는 해당 연구원(소)장 또는 두뇌한국 21 각 사업단(팀)장이 박사 후 전문연구원과의 계약에 의거 연구원(소)장 또는 두뇌한국 21 각 사업단(팀)장이 책임 관리한다.  
나.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연금, 연세대학교 퇴직금지급규정, 교 직원보수규정 등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4. 그밖의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### 부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- (2)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용어 개정 : '연수'연구원을 '전문'연구원으로)은 1997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- (3)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 1 조, 제 2 조, 제 4 조)은 200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- (4) 이 개정 규정(제 3 조, 제 4 조 제 2 호)은 200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